

행정법총론

총평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은 기본이론과 최신 판례를 균형 있게 배치한 전형적인 수험형 문제였다. 전체적으로는 2026년 국가직 9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중상)으로 평가되며, 단순 암기형 문제는 줄어 들고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법리 적용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2~3년간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와 「행정기본법」 조문이 적극 반영되었으며, 사례형 문제의 비중도 예년보다 높아졌다. 반면, 전통적인 행정행위·행정절차·행정소송의 기본 논점도 꾸준히 출제되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험이었다.

- 출제영역 분석

출제영역	문항	비중
행정법 통론(신고·행정행위· 행정입법·부관)	1,2,3,4,10,17	30%
행정작용법(계약·행 정지도·인허가의제)	5,8,12	15%
행정절차법	6	5%
정보공개법	7	5%
행정벌·실효성 확보	9,13,18	15%
국가배상·손실보상	14,20	10%
행정심판	15	5%
행정소송	16,19	10%
행정기본법	11,18	10%

이번 시험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
행정행위, 부관, 공정력, 행정지도 등 핵심 이론 확인
- 최신 판례의 숙지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극 반영하여 최신 법리 이해도 평가
- 조문과 판례의 종합적 이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의 조문과 판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
- 실무형 사례 해결 능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능력 검증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은 기본이론(약 60%), 최신 판례(약 30%), **최신 법령 및 조문(약 10%)**이 균형 있게 출제된 완성도 높은 시험이었다. 단순 암기보다는 기본 법리의 정확한 이해와 최신 판례의 적용 능력을 갖춘 수험생을 선별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으며, 향후 2027년 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출제의도]

-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심사범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 및 판례가 인정하는 신고의 효력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공신고, 영업신고,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에 관한 대표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 [선지 해설]

① X (정답)

- 시장·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신고인이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을 뿐, 전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이나 개발사업, 부동산투기, 이주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즉,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이며, 행정청에게 공익적 재량판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판결

② O

- 「건축법」상 착공신고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신고이다.
- 따라서 행정청이 착공신고를 반려하면 건축주가 적법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③ O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무허가건축물은 영업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신고가 성립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8946 판결

④ ○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와 달리 여러 인허가를 갈음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청은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따라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일반적인 신고와는 구별된다.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 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④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 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선결문제)

● [출제의도]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공정력과 기판력의 구별, 당연무효인 처분과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본이론 문제이다.

● [선지 해설]

① ×

-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분쟁의 조기 안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기판력과 본질적으로 다른 효력이다.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룰 수 없게 하는 효력이지만, 공정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효력에 불과하다.

□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

② ×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스스로 그 무효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따라서 반드시 먼저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927 판결 등

③ ○

-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 따라서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된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④ ×

- 위법한 건축허가가 존재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민사법원은 건축허가의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심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행정쟁송에서 건축허가를 취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4807 판결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법령해석, 자기구속의 원칙

● [출제의도]

-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위헌결정의 효력, 법령해석제도, 그리고 행정규칙·행정관행에 대한 자기구속의 원칙과 평등원칙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은 최근 국가직·지방직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이다.

● [선지 해설]

① ○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

은 대법원에 있다.

□ 헌법 제107조 제2항

② ○

- 법규명령의 근거가 되는 위임법률 또는 위임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 이는 법규명령이 상위법의 위임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

③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의 의미나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최종적인 법률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행정부의 법령해석은 사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④ ×

- 행정청이 내부준칙(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국민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즉,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며, 그 결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된다.
- 따라서 내부준칙이나 행정관행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461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효력발생, 처분의 정정, 처분성, 감액처분)

● [출제의도]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시기, 처분의 정정, 처분성, 그리고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최근 자주 출제되는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일부취소설)**과 흠의 치유와의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 해설]

① ○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비록 상대방이 우연히 다른 경로를 통하여 처분의 존재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95 판결

② ○

- 「행정기본법」 제18조는 처분에 오기 또는 오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 행정기본법 제18조

③ ○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공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④ ×

- 점용료 부과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어 이를 감액하는 처분은 기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범위만 남기는 새로운 처분이다.
- 즉, 감액처분의 실질은 일부취소이지, 흠의 치유가 아니다.
- 흠의 치유는 원래 위법하던 처분이 사후에 적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액처분은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흠의 치유와는 구별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7390 판결

5.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 ③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무수탁계약직

● [출제의도]

행정청의 계약작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질, 국책사업 개발협약, 예술단원 위촉관계에 관한 최신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X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다.
- 따라서 계약의 성립·이행·해제·해지 등에는 민법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084 판결

② O

-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행사인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내용과 근거를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즉,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③ X

-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를 사법관계라고 한 것은 판례에 반한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9620 판결

④ X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향악단의 단원을 일정 기간 위촉하였다가 해촉한 행위는 공법상 임명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해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종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37 판결

6.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절차법」(적용범위, 적용제외, 사전통지, 의견청취)

● [출제의도]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적용 제외사유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외국인의 사증발급, 고시에 의한 처분,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O

-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② O

- 행정청이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제출 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③ O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은 출입국관리법규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55119 판결

④ X

- 「행정절차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즉,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조의 적용범위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 절차)

● [출제의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방법, 제3자의 의견청취, 전자적 정보의 공개방법, 정보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판례보다 정보공개법 조문을 직접 묻는 출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선지 해설]

① ○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술(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서면에 기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2항

② ×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할 뿐이며, 공공기관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따라서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③ ○

-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④ ○

- 정보공개에 필요한 복사·출력·우송 등의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다만 공익적 목적(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 제17조

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③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지도(국가배상, 처분성, 헌법소원, 「행정절차법」)

● [출제의도]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해당 여부, 헌법소원의 대상성,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한 판례와 조문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 [선지 해설]

① ○

-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7642 판결

② ○

- 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 학칙 시정요구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지도이지만,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마337

③ ×

-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특정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비록 사실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④ ○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벌(양벌규정, 통고처분,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출제의도]

행정벌에 관한 기본이론과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의 양벌규정상 처벌가능성,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경합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X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법인)의 처벌은 종업원의 실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칙행위가 인정되면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가능하다.
- 즉, 종업원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가22 등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6530 판결

② O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공법인이다.
- 따라서 양벌규정에서 처벌대상인 "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③ O

-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및 통고처분 관련 규정

④ O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형사법의 상상적 경합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 ④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의 부관(기한·부담),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담의 변경 및 불이행의 효과

● [출제의도]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의 종류와 법적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 여부, 기한과 부담의 구별, 부담 불이행의 법적 효과, 부담의 변경가능성에 관한 대표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사례분석]

甲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도지사는 이를 허가하면서 두 가지 부관을 부가하였다.

- ①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기한에 해당한다.
- ② 1년 내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한다.

이 사례의 핵심은 기한과 부담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한은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부관으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담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

니며, 특별한 규정이나 철회처분이 없는 한 허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 [선지 해설]

① ○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대표적인 재량행위이다.
-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부관은 비례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② ○

-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 따라서 기한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허가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951 판결

③ ×

- 저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은 부담에 해당한다.
- 부담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일 뿐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은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철회처분이나 법률상 규정 없이 허가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1.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기본법」(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출제의도]

「행정기본법」 제7조의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경우의 초일 산입 여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이다.

● [선지 해설]

ㄱ. ○

-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이 곧 시행일이 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표현은 공포일을 시행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기간 계산을 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항

ㄴ. ×

-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이는 「행정기본법」이 「민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달리, 법령 시행일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항

ㄷ. ○

-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다.

□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항

1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③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인허가의제(효과, 범위, 취소·철회, 판례)

● [출제의도]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와 효과, 관련 인허가의 심사범위,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의 제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최근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일 뿐, 관련 인

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제되는 각 인허가의 요건도 모두 심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② X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 따라서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다른 인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기본법 제24조

□ 대법원 판례

③ O

- 의제된 인허가는 각각 독립된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그 중 일부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취소·철회된 인허가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의제된 인허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 행정기본법 제24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④ X

-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 행정청이 건축불허가를 하면서 농지전용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함께 적시하였더라도,
- 별개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 즉, 존재하는 처분은 건축불허가처분 하나뿐이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2967 판결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채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채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 ① (ㄱ, ㄷ)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공표, 공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 [출제의도]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와 조문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특히 행정상 공표의 처분성, 공매통지의 법적 성질, 대집행계고의 특정 정도,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보기분석]

ㄱ. O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 따라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두42504 판결

ㄴ. X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공매절차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 따라서 채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922 판결

ㄷ. X

-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에서는 의무자가 대집행의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 반드시 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ㄹ. O

-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건축법 제80조

1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

로 족하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국가배상법」(공무원의 배상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출제의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공무원의 개인책임,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책임의 관계에 관한 대표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상대적 안전성 이론과 행정처분 취소가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X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 이용자에게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영조물을 이용하지 않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06 판결

② X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③ X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즉,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책임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3112 판결

④ O

-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절대적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영조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10950 판결

1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

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④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심판(재결의 효력, 재결주의, 제소기간, 재결취소소송)

● [출제의도]

행정심판의 재결의 형성력, 재결 시 판단자료의 범위, 제소기간의 특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특히 재결에 고유한 위법과 원처분의 위법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 해설]

① O

-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재결을 하면 그 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원처분은 별도의 취소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행정심판법 제49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372 판결

② O

- 행정심판은 처분 당시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 즉, 처분 당시 제출된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4 판결

③ O

- 행정청이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④ X

-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의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을 다투기 위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심판청구에 따라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결 자체의 절차상·권한상 하자 등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372 판결

1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③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룰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항고소송(원고적격, 경원자소송, 제3자의 원고적격, 환경소송)

● [출제의도]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대표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법인의 주주, 경원자소송, 일반 공중의 이익, 환경상 이익에 대한 원고적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X

-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법인에 대한 처분을 다룰 원고적격이 없다. 특히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문은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2820 판결

② O

- 경원자소송에서는 경쟁자의 허가가 취소되면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자신의 신청이 법률상 명백한 장애로 처음부터 허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자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330 판결

③ O

- 일반 시민이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는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공중의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7207 판결

④ O

- 환경관계법령에서 일정한 환경영향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안의 주민은 물론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도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17.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④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입법(고시, 법규명령, 행정규칙, 처분적 고시)

● [출제의도]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법규명령형 고시, 행정규칙형 고시, 처분적 고시,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O

-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위임형식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② O

-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처분적 고시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가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단순히 고시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준이 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4148 판결

③ X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

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한 것은 판례에 반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④ ○

- 고시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변동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8630 판결

18.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제재처분(일부취소, 일부취소 가능성,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기준 및 제척기간)

● [출제의도]

제재처분에 관한 일부취소 법리,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기본법」상 재량제재의 고려요소,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특히 복수의 처분사유와 복수의 위반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 해설]

① ○

- 행정청이 여러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일부 처분사유가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는 행정처분의 유지가능성에 관한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두1512 판결

② ×

-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반행위별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위법한 부분만을 일부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제재처분의 내용과 법적 성질에 따라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판례는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일부취소만 하여야 하고 전부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7528 판결

③ ○

「행정기본법」 제21조는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 위반 횟수
- 그 밖의 사항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행정기본법 제21조

④ ○

- 「행정기본법」 제2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인 없는 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재처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이다.

□ 행정기본법 제23조

19.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②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③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④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소송(집행정지, 요건, 효력, 불복)

● [출제의도]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의 관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고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최신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564 판결

② ○

-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임시구제제도이다. 따라서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③ ×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여부,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등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의 존부가 심리대상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 대법원 2010. 4. 29. 자 2009무35 결정

④ ○

-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 ②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③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 ④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손실보상(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 [출제의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영업손실보상의 청구방법,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의 관계, 이중배상금지, 공익사업 시행 결과 설치된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선지 해설]

① ○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손실의 존재와 범위를 스스로 알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자가 손실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5129 판결

②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은

- 근거 법률,
- 성립요건,
-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5129 판결

③ ○

- 비록 두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전보를 받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5129 판결

④ ×

- 판례는 공익사업 시행 결과 설치된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손실이 반드시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5129 판결